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말 및 공휴일에 수감자의 변호인 접견, 의사 진료 허용〉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60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견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1. 29.
3. 회 부 일: 2024. 12. 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고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교정행정상의 편의보다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그런데 실무상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변호인과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불허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의자의 건강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안 제34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휴일 및 주말에도 수감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 등과 접견, 교통,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생략) <u><신설></u>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교정시설의 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제1항의 접견, 교통, 진료를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변호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변호인의 접견 일시·장소·횟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음.¹⁾

1)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사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부터 제59조의2까지에 접견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감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휴일에도 변호인 등과 접견하고 교통,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헌법 제12조제4항의 변호인 조력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적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재 교정기관의 인력과 자원, 예산으로 휴일에 수감자의 접견을 보장하고 관리할 여력이 있는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가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공휴일의 변호인 접견으로 예상되는 최소 운영인력을 222명(55개 교정기관), 필요예산은 약 34억 원으로 추정하는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른 휴일 근무 시 직원 증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공휴일 변호인 접견 예상 운영인력 및 예산>

전국 교정기관 수		최소 운영인력*	
55개 기관		222명	
최소 운영인력	공휴일 수 (2025년 기준)	휴일수당 (공안직 7급 기준)	예상 필요 예산 ²⁾
222명	160일	금 96,059원	약 34억 원

※ 자료 : 법무부

* 최소 운영인력은 개정법률(안)에 따라 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운영하는 경우 교대 근무자를 제외한 사무직 등 일근 직원의 공휴일 지원 근무를 전제로 산출된 것임

2) 산출 근거 : 7급 휴일수당 × 운영인력 × 공휴일 수 = 96,059×222×160 = 3,412,015,680원

둘째, 현재도 공휴일에 수감자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변호인을 통한 외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정시설은 공휴일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사 등 의료과 당직 근무자가 투약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고,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료지도 하에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접견을 통한 진료의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함.

셋째, 접견의 남용가능성, 법률의 개정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수감 기간 중 수감 일수보다 접견 횟수가 수 배 많은 상황 등을 통칭하는 “황제 접견”³⁾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휴일 접견 허용 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점, 현재 접견의 휴일 제한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고 있는바, 개정안의 휴일 변호인 접견 제한 금지 조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것인지,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건강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고, 미결수용자에 한하여 휴일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90808461710356>

문 의 처
02)6788-5063

참고 자료

※ 자료 : 법무부

▶ 의무관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1.
정 원	117	117	118	118	117
현 원	91	90	83	83	89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외부의료시설 이송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1.
인 원	12,805	12,983	13,469	15,712	15,094

※ 공휴일 외부의료시설 이송 건수는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